##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2 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이병훈·양정숙·박 정

송갑석 · 윤관석 · 이상헌

신영대 · 주철현 · 황운하

이수진(비)・이원택・도종환

김승원 · 남인순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"상호대차"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"상호대차(相互 貸借,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)"로 설명 을 덧붙여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8조제5호). 법률 제 호

##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5호 중 "상호대차"를 "상호대차(相互貸借, 도서관 간에 도서 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업무) 공공도서관은 정보	제28조(업무)
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	
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	
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	
다.	<b>.</b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	5
력 및 도서관자료의 <u>상호대차</u>	<u>상호대차</u>
	(相互貸借, 도서관 간에 도서
	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
	<u>말한다)</u>
6. ·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